

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

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62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. 3. 6. 최두임 의원 등 5인
나. 회 부 일 자: 2026. 3. 13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6. 3. 25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최두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한국수화언어법」에 따라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·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
- 2)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(안 제4조)
- 3) 이용대상(안 제5조)
- 4)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6조)
- 5) 재정지원 및 지도·감독(안 제7조 및 제8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 법령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한국수화언어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
- 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3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-4호

- 예고기간: 2026. 3. 6.(금) ~ 3. 12.(목)[6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1조~제3조)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와 군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목적과 법령에 부합함.
- (안 제4조) 센터는 수어통역, 상담, 교육 등 기능을 수행하며, 필요 시 군수 승인 사업을 포함하고, 위탁 시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여 법적·행정적 적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함.
- (안 제5조) 등록 청각·언어장애인을 우선하되, 공공기관·단체와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정책 실효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함.
- (안 제6조) 운영위원회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6조를 준용하여 구성·운영하도록 하고, 운영계획, 프로그램, 권익 보호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. 이에 따라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,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함.
- (안 제7조~제8조) 센터 운영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지도·감독 및 보고 체계를 명시하였음. 이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,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나.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수어통역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운영위원회와 지도·감독 등 핵심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법적·행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3. 25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